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4. 14 선고 2021가단1072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호사 장동찬

피고A

변론 종결2022. 3. 24.

판결 선고2022. 4. 14.

주 문

- 가.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2020. 7. 10.
접수 제503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 30. 및 2020. 6. 12. D의 대표자인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번호	E	F
보증금액	50,000,000원	20,000,000원
보증일자	2019. 10. 30.	2020. 6. 12.
보증기한	2024. 10. 25.	2023. 6. 7.

나.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고 한다)에 제출하고 G은행으로부터 2019. 10. 30. 50,000,000원, 2020. 6. 12. 2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2020. 10. 17.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1. 3. 9. G은행에 70,706,65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미환급보증료 761,078원을 상계처리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69,945,573원이 되었다.

라.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구미시법원 2021차전230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6. 2. B은 원고에게 71,555,487원 및 그 중 69,945,573원에 대하여 2021. 6.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21. 6. 1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B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7. 10.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B,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하였지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 약 3개월이 경과할 무렵 B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가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지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G은행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B의 채무초과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8 내지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조합, I단체, J주식회사, K은행,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B는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적극재산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87,705,000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111,105,000
3	별지 목록 각 토지 지상 건물	117,180,000
4	포항시 북구 L답 760㎡ 중 229/429 지분	7,099,533 (= 17,500원 × 760㎡ × 229/429, 원 미만 버림)
5	포항시 남구 M아파트 N호	127,000,000
합계	450,089,533	

나) 소극재산

1	G은행	70,000,000원
2	H조합	109,107,105원
3	H조합	9,029,118원
4	H조합	6,183,209원
5	O회사	16,677,000원
6	P회사	96,000,000원
7	J	31,700,209원
8	K은행	31,223,203원
9	Q 주식회사	70,000,000원
10	신용보증기금	33,033,048원
11	주식회사 R	31,960,049원
합계	504,912,941원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 하여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은 이로 말미암아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장기 미수금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그러나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B의 피고에 대한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B의 사업 계속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로도 B에게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자력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하경

별지